

-
- 문서번호 : KILA 제2021 - 249호 [직인생략] [관련부서회람]
 - 시행일자 : 2021. 1. 5
 - 수 신 : 대표이사
 - 참 조 : 인사/총무팀, 기획팀, 물류팀
 - 제 목 :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가입 안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2009년 6월,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물류분야의 대표기관으로서, 물류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물류정책 및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의 자문 및 건의를 통해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최신 물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물류전문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어 새로운 물류정보를 접해 보시고 다양한 회원 활동을 통해 귀사의 물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회원가입 안내 1부.
2. 회원가입신청서 1부. 끝.

한국통합물류협회장

■ 회원자격

- 정 회원 :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수출입업과 이와 관련서비스업 등 물류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영리,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자
- 특별회원 : 물류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교수, 연구원, 물류관리사 등 물류관련 전문인력, 해외교포 물류인에 해당되는 자

■ 가입절차

① 가입서류 제출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카달로그 각 1부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송부

② 회비 납부

- 협회 명의 법인 계좌로 회비 납부(법인 계좌번호 등은 개별 통보)

③ 가입승인 및 서비스

- 회원가입 승인 통보 및 회원 서비스 안내

■ 가입안내

(우 031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405호(태화빌딩)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지원실 김종호 과장 전화 : (070)7090-6654(직통), (02)786-6112(대표)
팩스 : (02)712-0611 이메일 jongho@koila.or.kr

■ 회원서비스

<p>물류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자 정부지원(80~100%) 교육 (고용노동부 지원 교육)<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스트마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이커머스 등 20개 전문 물류과정• 물류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수강료 할인<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전문컨설턴트양성과정, 물류자동화 사내도입 및 ROI분석실습 과정, ALEX물류연구회(연10회), 우수물류현장 연수 등
<p>비즈니스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물류, 택배, 컨테이너운송, 스마트물류 등 전문위원회 활동에 참여<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대정부 건의• 필요시 전문분야별 모임 구성 후 정책현안 대응에 참여

최신 물류 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 물류동향 소식지 제공 (주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정보 및 물류 정책 제언 진행 상황 - 신규 물류정책, 업계 현안 사항, 협회 활동사항 등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위원회를 통한 관련 법률 및 규제개선 등 정책건의 · 물류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회원사 애로사항 수렴 및 관련 부처 건의
정부포상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의 날 행사시 한국물류대상 유공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산업발전 (훈·포장, 대통령·총리·장관 표창) (연1회) · 기타 물류부문 정부포상 유공자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의 날 물류부문 정부포상에 유공자로 추천
물류 전시회 참가비 할인 및 상담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물류산업대전 참가비 할인 (15%), · 물류서비스 설명회 무료참가 및 발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의 물류장비 및 서비스 홍보 기회 제공 · 국내·외 화주기업과의 1:1비즈니스 상담회 참석 기회 제공
경비절감 지원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창고의 보험료를 경감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단체보험적용 (보험료 10~20% 할인) · 택배차량 화물자동차보험 및 택배복지카드 가입 지원
협회 주최 프로그램 참가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박람회, 특별세미나, 해외물류연수 등의 협회 주최 행사 우선초청, 특별초청 및 참가비 할인

■ 회비 안내

단위 : 천원

구 분		입회비	연회비	비 고
정회원	매출액 300억원 이상 법인	5,000	5,000	기업 영리 법인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억 미만 법인	2,000	2,000	
	매출액 50억원 미만 법인	500	500	
특별회원	단체 및 법인	1,000	1,000	비영리 단체 등
	개 인	100	100	-

* 매출액은 회비 부과일 전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산정

* 최초 가입시에는 입회비만 납부하며, 가입 다음연도부터 매년도 1/4분기 중에 연회비 납부

회원가입신청서

- 정회원
 특별회원

※회원번호		업종분류	<input type="checkbox"/> 물류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유통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가입 사업장명 (단체명)	한 글			영 문
	주 소	한글 ()		
		영문 ()		
	사업자 등록번호			법 인 등록번호
홈페이지	http://			
대표자 성명	한 글			영 문
회사 개요	업 태			종 목
	자본금	억 원	연간매출액	억 원
	종업원수	명	설립일자	년 월 일
	해외진출국			보유면허
	주요사업분야			
대표이사	부서/직위 : TEL : Mobile :	성 명 : FAX : E-Mail :		
물류담당 부서장	부서/직위 : TEL : Mobile :	성 명 : FAX : E-Mail :		
회계/업무 연락담당	부서/직위 : TEL : Mobile :	성 명 : FAX : E-Mail :		
<p>한국통합물류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가입)의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며,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체명 :</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직인 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귀중</p> <p>※별 첨 : 협회 정관중 회원의 권리·의무사항 1부</p>				
<p>※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소개서 (홍보용 카달로그 등) 1부</p> <p>* 협회 명의 법인 계좌로 회비 납부 후(법인 계좌번호 등은 개별 통보) 회원가입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보내주시면 회원가입이 됩니다.</p> <p>* 담당자 E-mail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자료 이메일 서비스 실시)</p> <p>* 문의처 : 회원지원실 (TEL:070-7090-6654/FAX:02-712-0611/jongho@koila.or.kr)</p>				

협회 정관중 회원의 권리·의무사항

< 협회 정관(제2장 회원) >

□ 제7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행사는 정회원에 한 한다.

□ 제9조(권리행사 제한)

정회원으로 총회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2회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체회비의 완납 시까지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협회가 그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물류관련 조사 또는 자료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협회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제12조(포상)

- ①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되거나 귀감이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단체 그리고 업체가 시민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본 협회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